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6일 16시 31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관리	3
치매환자 등록	3
대상	3
제출서류	3
신청방법	3
치매치료관리비 지원	3
대상 : 여수시민 치매진단자 중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	3
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	3
치매어르신 실종예방관리 사업	4
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	4
치매등록가구 사례관리	4
치매 공공후견사업	4
문의처 : 여수시치매안심센터 ☎ 061-659-5440	5

치매환자 등록

대상

-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 치매어르신

제출서류

- 1 치매환자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
- 2 처방전 1통(치매코드, 치매약 기재)
- 3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1통
- 4 본인통장 또는 가족통장
- 5 개인정보처리 위임장(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)
- 6 요양시설근무자(재직증명서)

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위임장 hwp 다운로드

신청방법

- 여수시치매안심센터 방문 등록(구비서류 지참)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대상 : 여수시민 치매진단자 중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진단기준 : 의료기관 치매 진단자(상병코드 F00~F03,G30)
- 치료기준 : 치매치료 성분약 복용하는 자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	9인
기준액	95,183	157,035	202,377	247,170	289,638	324,452	377,299	422,318	453,848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익성 가입자	(107,509)	(177,371)	(228,585)	(279,179)	(327,146)	(366,469)	(426,159)	(477,008)	(512,621)
지역 가입자	24,266	109,680	152,948	205,217	254,448	291,356	351,294	400,222	433,430
	(27,408)	(123,884)	(172,755)	(231,793)	(287,399)	(329,087)	(396,787)	(452,051)	(489,559)

※ ()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

- 제외대상 :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, 국가유공자,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
- 지원금액 : 월 3만원(연 36만원 한도) 이내 본인부담금
- 지급방식 : 서류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
- 지원자격 관리 : 2년마다 소득기준 재조사 (소득기준 초과자 퇴락)
- 제출서류 : 치매등록 서류와 동일

치매어르신 실종예방관리 사업

- 대 상 : 관내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
- 지문등록 : 치매안심센터,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방문신청
- 배회인식표 :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/ 약70매 제공
- 배회감지기 :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

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

- 대 상 :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거동불편 어르신
- * 영양원 입소자는 지원 제외
- 제공기간 :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
- 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지원기간 연장 가능(증빙서류 필수)
- 지원내용 : 기저귀 등 조호물품 제공(물품 종류는 변동 가능)
- 미등록자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이용 가능

치매등록가구 사례관리

- 대 상 : 치매등록자
- 지원내용 : 가정방문 또는 유선으로 건강관리, 일상생활관리, 가정 내 안전관리, 가족상담,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

치매 공공후견사업

- 대 상 :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
- 내 용
 - >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>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: 월 20만원(월 최대 40만원)
※ 특정후건을 원칙으로 함

 문의처 : 여수시치매안심센터 ☎ 061-659-5440

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